

잠비아 (Zambia)

◎ 주요 변동사항

구 분	2017	2019	비 고
보험료율 (근로자/자영자/사용자)	5% / 10% / 5%	5% / 10% / 5%	-
보험료 부과 상한 / 하한 소득	17,892.16 kwacha / 없음	21,476 kwacha / 없음	상한소득 ↑
연금수급 개시연령	55세	55세	-
연금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	15년	15년	-
노령연금 지급률 (40년 기준)	40%	40%	-
일시금	보험료 조정 총액 + 이자	보험료 조정 총액 + 이자	-

1 근거법 제정 시기

- 최초법 : 1966년(적립금고)
- 현행법 : 1996년(연금제도, 2000년 시행)

2 제도형태

- 사회보험제도

3 적용대상

- 당연적용 : 농업 근로자, 도시지역의 가사근로자, 견습생, 2000년 2월 1일 이후에 근로를 시작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정부의 모든 근로자
- 임의적용 : 자영자 및 60개월 이상 가입이력이 있는 특정 비정규부문 근로자
- 적용제외 : 가사노동
- 특별제도 : 2000년 2월 1일 이전에 근로를 시작한 국가공무원 및 지방정부 근로자, 군인

4 재원조달

- 가입자
 - 월 소득의 5%, 임의가입자는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15 kwacha, 상한소득은 21,476 kwacha

- 자영자
 - 월 소득의 10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15 kwacha, 상한소득은 21,476 kwacha
- 사용자
 - 월 소득의 5%
 - 보험료 산정을 위한 월 하한소득은 15 kwacha, 상한소득은 21,476 kwacha
- 정부 : 없음. 사용자로서 보험료 납부

5

급여종류별 수급요건

- 노령연금
 - 보험료 납부기간이 180개월 이상인 55세(2015년 8월 14일 이후 가입자는 60세) 도달자
 - 2000년 2월 1일 기준, 39세 ~ 48세였던 자의 연급수급 개시연령은 38세 이후 1년당 12개월씩 하향
 - 퇴직 필수
 - 조기연금 : 노령연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50세(2015년 8월 14일 이후 가입자는 55세) 도달자.
조기연금은 반드시 월 최저 노령연금을 초과해야 함.
 - 연기연금 : 최대 65세까지 연기 가능
 - 노령일시금 : 납부기간 180개 미만인 55세(2015년 8월 14일 이후 가입자는 60세) 도달자
 - 노령연금 및 일시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장애연금
 - 장애 발생 전 36개월 중 12개월을 포함하여 최소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영구적 업무불능 판정을 받은 퇴직연령 미만자
 -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의료 위원회가 업무능력 상실정도를 판단
 - 정상퇴직연령 도달 시 장애연금은 중단되고 노령연금으로 대체
 - 장애일시금 : 보험료 납부기간이 60개월 미만이고 영구적 업무불능 판정을 받은 퇴직연령 미만자
- 노동사회보장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의료 위원회가 업무능력 상실정도를 판단
 - 장애연금 및 일시금은 해외 지급 가능
- 유족연금
 - 사망자가 사망 당시 6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였거나 노령·장애연금을 수급 중 또는 수급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, 18세 미만 자녀(학생인 경우 25세, 장애가 있는 경우 연령제한 없음)
 - 사망자의 자녀를 한 명 이상 양육하는 배우자는 재혼 이후에도 유족연금 수급 가능
 - 유족연금은 해외 지급 가능

- 유족일시금
 - 사망자가 노령 또는 장애일시금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지급
 - 수급가능 유족 : 배우자, 자녀 또는 지정 수급자
- 장제비 : 사망자가 사망 전 36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거나 노령 또는 장애 연금을 수급 중이었거나 수급 자격이 있었던 경우 지급

6 급여종류별 지급액

○ 노령연금

- 연금월액은 가입자의 평균조정소득월액에 보험료 납부월수 및 대체율을 곱한 금액
- 대체율은 0.001111
- 최저 연금월액 : 국가평균소득월액의 20%
 - 2018년 기준 국가평균소득월액 : 4,975 kwacha
- 최대 연금월액 : 가입자의 평균조정소득월액의 40%
- 조기연금 : 국가평균소득월액의 20% 이상 감액된 연금 지급
- 연기연금 : 노령연금과 같은 방식으로 산출
- 급여조정 : 국가평균소득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노령일시금 :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조정 총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장애연금

- 연금월액은 가입자의 평균조정소득월액에 보험료 납부월수 및 대체율을 곱한 금액. 장애 발생 시점부터 연금수급연령까지 근로하지 못한 연도에 대해 1년당 월 소득의 1.5%를 인정받음
- 대체율은 0.001111
- 최저 연금월액 : 국가평균소득월액의 20%
 - 2018년 기준 국가평균소득월액 : 4,975 kwacha
- 급여조정 : 국가평균소득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장애일시금 : 근로자와 사용자가 납부한 보험료 조정 총액에 이자를 가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

○ 유족연금

- 사망자가 수급하였거나 수급할 수 있었던 노령 또는 장애연금액 지급. 사망자가 사망 당시 연금 수급자가 아니었던 경우 사망일을 장애 발생일로 산정한 장애연금액 지급
- 배우자가 45세 미만이고 15세 미만의 사망자와의 자녀가 없는 경우 2년간 감액된 연금 지급
- 한 명 이상의 수급가능 유족이 있는 경우 연금은 법률에 따라 분할 지급
- 최저 연금월액 : 국가평균소득월액의 20%
 - 2018년 기준 국가평균소득월액 : 4,975 kwacha
- 급여조정 : 국가평균소득의 변동에 따라 매년 조정됨
- 유족일시금 : 가입자가 수급할 수 있던 노령 또는 장애일시금액 지급
- 장제비 : 최저 연금월액의 10배에 해당하는 일시금을 (우선순위에 따라) 배우자, 부모 또는 형제자매, 장례비용을 지불한 자에게 지급

- 노동사회보장부(Ministry of Labor and Social Security)
 - 전반적 감독
 - <http://www.mlss.gov.zm>

- 국가연금제도국(National Pension Scheme Authority)
 - 3자 위원회와 국장에 의해 운영
 - 2개 지역사무소와 27개 구역사무소를 통하여 제도 운영 및 보험료 징수
 - <http://www.napsa.co.zm>

<2019년 ISSA 자료>